

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2008년 7월 1일 시행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(장기요양 보험료의 징수)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「국민건강보험 법」 제62조의 건강보험료와 통합되어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관련법령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8조,
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
3. 주요골자

- 가. 조례명 명칭 변경
- 나. 용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시기(안 제3조, 제4조)
- 라. 지원대상자 선정, 조사 실시(안 제5조, 제6조)
- 마. 보험료 지급 및 대상자 관리 등(안 제8조, 제9조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건은

- 해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적정한 보건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령화사업과 연계하여 시책사업을 추진함이 필요충분한 조치라고 판단되며
-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건강보험료를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됨
- 또한 중구를 비롯하여 기장군 등 8개 구·군에서 기히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, 여타 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준비중에 있으며
- 특히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을 비롯하여 「노인복지법」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등 관련법령에 노인관련 비용충당에 필요한 금원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 전부개정조례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

2008. 6. 19

도시전문위원 정 금 배